##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홍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4961

발의연월일: 2024. 10. 28.

발 의 자: 박홍근 · 서영교 · 오기형

정태호 · 최기상 · 안도걸

진성준 • 한정애 • 임광현

김영진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

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치료·예방·진단 목적으로 조제한 동물의혈액 공급을 추가하고,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기한을 연장하며,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이 부가가치세를 수시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,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한 가산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### 주요내용

가. 동물의 혈액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(안 제26조제1항제5호)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치료·예방·진단 목적으로 조제한 동물의 혈액 공급을 추가함.

나.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기한 연장(안 제

47조제1항 및 제63조제4항)

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등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기한을 '2024년 12월 31일까지'에서 '2027년 12월 31일까지'로 3년 연장함.

다. 수시부과 제도 신설(안 제57조의2 및 제68조제2항 신설)

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은 사업자가 과세기간 중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하여 그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.

라.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율 상향 조정(안 제60조제1항제2호 및 제68조의2제1항)

명의위장 사업자인 일반과세자에 대한 가산세율을 그 타인 명의의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'1퍼센트'에서 '2퍼센트'로, 명의위장 사업자인 간이과세자에 대한 가산세율을 '0.5퍼센트'에서 '1퍼센트'로 상향조정함.

## 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「국회법」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 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.

### 법률 제 호

##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부가가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6조제1항제5호 중 "혈액"을 "혈액(치료·예방·진단 목적으로 조제한 동물의 혈액을 포함한다)"으로 한다.

제47조제1항 전단 중 "2024년 12월 31일"을 "2027년 12월 31일"로 한다.

제48조제2항 중 "납부세액"을 "납부세액(해당 예정신고기간에 대하여 제57조의2에 따라 수시부과한 세액은 공제한다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경감한 세액"을 "경감한 세액 및 제57조의2에 따라 수시부과한 세액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"납부세액"을 "납부세액(해당 예정신고기간에 대하여 제57조의2에 따라 수시부과한 세액은 공제한다)"으로 한다.

제49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제57조의2에 따라 수시부과한 세액

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이 조에서"를 "이 조 및 제57조의2 에서"로 한다.

제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7조의2(수시부과의 결정)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사업자가

과세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그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(이하 "수시부과"라 한다)할수 있다. 이 경우 제5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.

- 1. 제6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- 2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
- ②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하여 적용한다. 이 경우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제49조에 따른 확정신고기한 이전에 발생한 경우로서 사업자가 직전 과세기간에 대하여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을 수시부과기간에 포함한다.
- ③ 수시부과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제5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  -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을 「국세징수법」에 따라 징수한다.
  - 1.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에 신고한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: 그 미납부 세액
  - 2. 제57조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을 한 경우: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

3. 제57조의2에 따라 수시부과한 경우: 수시부과한 세액 제60조제1항제2호 중 "1퍼센트"를 "2퍼센트"로 한다.

제63조제4항 중 "2024년 12월 31일"을 "2027년 12월 31일"로 한다.

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경감한 세액"을 "경감한 세액 및 제68조제2항에 따라 수시부과한 세액"으로, "제68조"를 "제68조제1항"으로 한다.

제67조제2항 중 "제66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"을 "제66조제1항 본문, 같은 조 제5항 및 제68조제2항"으로 한다.

제68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간이과세자에 대한 수시부과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57조의2를 준용한다.

제68조의2제1항 후단 중 ""0.5퍼센트""를 ""0.5퍼센트"로, "2퍼센트"는 "1퍼센트""로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동물의 혈액에 대한 면세에 관한 적용례) 제26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수시부과의 결정에 관한 적용례) 제57조의2 및 제6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57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

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제4조(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60조제1항제2호 및 제68조의2제1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6조(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	제26조(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
대한 면세) ① 다음 각 호의	대한 면세) ①
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	
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.	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5. 의료보건 용역(수의사의 용	5
역을 포함한다)으로서 대통령	
령으로 정하는 것과 <u>혈액</u>	혈액(치료
	·예방·진단 목적으로 조제
	한 동물의 혈액을 포함한다)
6. ~ 20. (생 략)	6. ~ 20.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47조(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	제47조(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
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) ①	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) ①
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등을	
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	
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	
를 <u>2024년 12월 31일</u> 까지 발급	<u>2027년 12월 31일</u>
(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	
제32조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	
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로	
한정한다)하는 경우에는 전자	
세금계산서 발급 건수 등을 고	
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	

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 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. 이 경우 공제한도는 연간 100만원으로 한다.

### ②·③ (생 략)

제48조(예정신고와 납부) ① (생략)

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(이하 "예정신고"라 한다)를 할 때 그 예정신고기간의 납부 세액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와 함께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(제51조의 경우에는 주된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)에게 납부하거나 「국세 징수법」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(그 대리점을 포함한다) 또는 체신관서(이하 "한국은행등"이라 한다)에 납부하여야 한다.

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 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 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법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

· 
·
②·③ (현행과 같음)
제48조(예정신고와 납부) ① (현
행과 같음)
②
<u>납부</u>
세액(해당 예정신고기간에 대
하여 제57조의2에 따라 수시부
과한 세액은 공제한다)
③

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(直前)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(제4 6조제1항, 제47조제1항 또는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4조의 8제2항, 제106조의7제1항에 따 라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경감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하고, 제57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과 「국세기본법」 제45조 및 제45조의2에 따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 액으로 한다)의 50퍼센트(1천 원 미만인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금액은 버린다)로 결정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까지 징수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하 지 아니한다.

## 1. ~ 3. (생 략)

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

경감한 세액 및 제57조의2에
따라 수시부과한 세액
1. ~ 3. (현행과 같음)
<b>4</b>

업실적이 악화된 경우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예정신 고를 하고 제2항에 따라 예정 신고기간의 <u>납부세액</u>을 납부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3항 본문 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.

제49조(확정신고와 납부) ① (생략)

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(이하 "확정신고"라 한다)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확정신고 시의 납부세액에서 빼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와함께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(제51조의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)에게 납부하거나 「국세징수법」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등에 납부하여야 한다.

1.·2. (생 략) <신 설>

<u>납</u> 부세액(해당 예
정신고기간에 대하여 제57조의
2에 따라 수시부과한 세액은
공제한다)
제49조(확정신고와 납부) ① (현
행과 같음)
②
1. · 2. (현행과 같음)
3. 제57조의2에 따라 수시부과

제57조(결정과 경정) ① 납세지 관할 시무서장,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 (이하 <u>이 조에서</u> "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"이라 한다)은 사업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 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.

1. ~ 4. (생 략) ②·③ (생 략) <신 설>

<u>한 세액</u>
제57조(결정과 경정) ①
10111(201 00)
시 고 미 케드7고이의제
<u>이 조 및 제57조의2에</u>
<u>서</u>
·
1. ~ 4. (현행과 같음)
②·③ (현행과 같음)
제57조의2(수시부과의 결정) ①
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사
업자가 과세기간 중에 다음 각
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
우에는 수시로 그 사업자에 대
한 부가가치세를 부과(이하
"수시부과"라 한다)할 수 있다.
이 경우 제57조제2항 및 제3항
을 준용한다.
1. 제60조제3항 각 호의 어느

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
제58조(징수) ① 납세지 관할 세 무서장은 사업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에 신고 한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 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 다 적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세액을 「국세징수법」에 따라 징수하고, 제57조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을 한 경우에는 추가

- 2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 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
- ②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제1항 각 호의 사 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 과기간으로 하여 적용한다.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제 49조에 따른 확정신고기한 이 전에 발생한 경우로서 사업자 가 직전 과세기간에 대하여 확 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직전 과세기간을 수시부과 기간에 포함한다.
- ③ 수시부과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58조(징수) ① 납세지 관할 세 무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른 세액을 「국세징수법」에 따라 징수한다.
  - 1.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에 신고한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

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「국 이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 세징수법」에 따라 징수한다.

#### ② (생략)

- 제60조(가산세) ① 사업자 또는 🗷 국외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 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.
  - 1. · 1의2. (생략)
  - 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 의 명의로 제8조에 따른 사 업자등록을 하거나 그 타인 명의의 제8조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 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타인 명의의 사업 개시일부 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<u>1퍼센트</u>
  - ② ~ ⑩ (생 략)

제63조(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제63조(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

- 한 경우: 그 미납부세액
- 2. 제57조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을 한 경우: 추가로 납부 하여야 할 세액
- 3. 제57조의2에 따라 수시부과 한 경우: 수시부과한 세액
- ② (현행과 같음)

세60조(가산세) ①
1.・1의2. (현행과 같음)
2

----- 2퍼센트

② ~ ⑩ (현행과 같음)

④ 간이과세자(제36조제1항제2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이과세자는 제외한다)가 전자세금계산서를 2024년 1 2월 31일까지 발급(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제32조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로 한정한다)하고 기획재정부렁으로 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

장에게 제출한 경우의 해당 과

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액

공제에 관하여는 제47조제1항

세액) ① ~ ③ (생 략)

### ⑤ ~ ⑦ (생 략)

을 준용한다.

제66조(예정부과와 납부) ① 사 전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67조에 도 불구하고 간이과세자에 대하여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(제46조제1항, 제63조제3항·제4항 또는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4조의8제2항에 따라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경감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

세액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4
2027년 <u>1</u>
<u> 2월 31일</u>
⑤ ~ ⑦ (현행과 같음)
제66조(예정부과와 납부) ①
경감한 세액 및 제68조제2항에

그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하고. 제68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과 「국세기본법」 제45조 및 제45조의2에 따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 액으로 한다)의 50퍼센트(직전 과세기간이 제5조제4항제1호의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 액의 전액을 말하며, 1천원 미 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금액은 버린다)를 1월 1일 부터 6월 30일(이하 이 조에서 "예정부과기간"이라 한다)까지 의 납부세액으로 결정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정부과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(이하 "예정부과기한"이라 한다)까지 징수한다. 다만,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 하다.

1. ~ 3. (생략) ② ~ ⑥ (생략)

따라 수시부과한 세액
<u>제68조제1항</u>
1. ~ 3. (현행과 같음)
② ~ ⑥ (현행과 같음)

- 제67조(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 부) ① (생략)
  - ②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경우 제66조제1항 본 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납부한 세액은 공제하고 납부 한다.
  - ③ (생략)

제68조(간이과세자에 대한 결정 • 경정과 징수) ① (생 략)

### <신 설>

- ③ 삭 제
- ④ (생략)
- 제68조의2(간이과세자에 대한 가 산세) ① 간이과세자에 대한 가산세 부과에 관하여는 제60 조제1항 · 제2항 및 같은 조 제 3항제1호·제3호·제5호를 준 용한다. 이 경우 제60조제1항 각 호 중 "공급가액"은 "공급 대가"로, "1퍼센트"는 "0.5퍼센 트"로 본다.
  - ② ~ ⑤ (생 략)

제67조(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
부) ① (현행과 같음)
②
제66조제1항 본
<u>문, 같은 조 제5항 및 제68조</u>
제2항
③ (현행과 같음)
제68조(간이과세자에 대한 결정
·경정과 징수) ① (현행과 같
승)
② 간이과세자에 대한 수시부
과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57조
의2를 준용한다.
④ (현행과 같음)
제68조의2(간이과세자에 대한 가

사세) ① ----------"0.5퍼센트"로, "2퍼센 <u>트"는 "1퍼센트"----</u>.

② ~ ⑤ (현행과 같음)